

		보도자료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배포 일시		2015. 6. 25(목)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지도교섭과	담당 자	• 과장 양동엽, 사무관 전해진, 주무관 이창열 • ☎ (044)200-5560, 5563, 5564			
보도 일시		2015년 6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오징어 성어기 어업질서 확립 추진

- 오징어 조업 시작, 내년 3월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

오징어 성어기 도래에 따라 오징어 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징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6월부터 오징어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협업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오징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인 오징어 불법어업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으로 오징어를 잡는 불법공조조업,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동해 구중형트롤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법 선미 경사로 설치,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해역에서 조업 제한을 받고 있는 대형 트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해수부는 지난 6월 12일 오징어 성어기 어업지도 민관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불법어업 지도단속 방안,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어업인의 어구손상 등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에 적극대처하고,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지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6월 오징어 성어기를 시작으로 오징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10월부터는 동해안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 오징어 성어기 도래에 따라 관련업계의 출어동향 파악과 불법조업 단속, 우리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마련
- ◇ 동해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어구손괴, 어구절취, 긴급피난 등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업계의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I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6.12(금) 14:00~17:20 / 경북 포항수협 회의실
- 참 석 : 50여명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주관)
 - 관할 4개 시·도, 해경안전서(동해, 포항), 수협(포항, 구룡포, 경주, 후포, 울릉), 어업정보통신국(속초, 후포, 포항, 부산), 수산자원관리공단(TAC요원)
 - 전국오징어채낚기실무자연협회, 전국근해채낚기연합회, 한수연경북연합회, 선주협회 등

II

주요 협의내용 및 결과

- 대화퇴, 러시아수역, 동해중남부 등 오징어 주 어장에 출어하는 조업 어선들의 응급의료, 조난구조 등 우리어선 안전조업지도 강화
- 채낚기, 동해구트룰, 대형트룰 등의 오징어 불법조업 지도단속 철저
- 북한수역으로 북상 이동하는 동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에 적극 대처
- 울릉도에 중국어선들의 긴급피난시 해양오염, 오물쓰레기투기, 불법 조업 등에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이 선제적 대응 공조
- 지자체, 수협, 어업무선국 등에서는 중국어선의 어구손괴, 절취, 불법조업 신고체제 강화
- 수협어업무선국 대어업인 준법조업 홍보방송 강화
- 오징어 포획 채취금지기간(4.1-5.31) 해제 또는 기간조정 요청
- '14. 12월 중국어선의 피항으로 울릉도 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항장소 별도 지정 요청